

[일련번호 : 47]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 추징금 정산 소홀 등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과는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·임금지급 등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소득세법」 제137조(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)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59조(근로소득세액공제)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게 되어 있다. 또한 「근로기준법」 제36조(금품 청산)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, 보상금,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.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과는 기간제근로자(도로보수원)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면서, 환급세액은 각 대상자의

개인계좌로 환급하였으나 추징세액이 발생한 ○○○ 및 ○○○의 세액 총 372,660원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2023년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 (△△과-2999, 2023. 3. 2.).

[표1] 2022년 귀속 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 추징 실시 내역

연번	성명	추징할세액(원)			지적사항
		소득세	지방소득세	계	
1		238,840	23,880	262,720	추징금을 근로자에게 반환받지 않고 2023년 예산으로 납부
2		99,950	9,990	109,940	
	계	338,790	33,870	372,660	

또한 2021년 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 결과 환급대상자인 ○○○ 외 3명에 대한 환급금 총 1,010,310원이 2022. 4. 7. △△과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,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23. 7. 7.에야 각 대상자에게 환급하는 등 환급 업무를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다.

[표2] 2022년 귀속 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 환급 지연 내역

연번	성명	환급할세액(원)	부서통장 입금일자	근로자 환급일자	지적사항
1		165,000	2022.04.07.	2023.07.07.	환급 약 1년 3개월 지연
2		185,310	2022.04.07.	2023.07.07.	
3		330,000	2022.04.07.	2023.07.07.	
4		330,000	2022.04.07.	2023.07.07.	
	계	1,010,310			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과장은

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징금 372,660원을 징수하여 처리하고,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고, 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